

세무회계저널

제17권 제6호 2016년 12월 pp.143~173

한국세무학회

기업의 규모·업종별 안전보건 투자에 따른 세액공제 제도 개선방안*

심충진** · 구자은***

<요 약>

기업의 안전의식 미비로 발생될 수 있는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의 안전보건 설비 투자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의 목적은 안전보건 투자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안전설비 투자 세액공제의 적용 가능성을 판단하고, 기업의 규모·업종별 안전보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차별적 적용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 기업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보건에 대한 회계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결과, 안전설비 투자 세액공제 규정과 안전설비 투자와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간의 관련성이 미흡하였고,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대상 설비를 규정할 때 방호장치를 분리하도록 규정하여 법에 대한 적용 가능성이 낮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조세특례제한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각 대안별로 장·단점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한편 안전설비 투자 세액 공제율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해 현황과 외국사례 등을 비교한 결과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분류하여 세액 공제율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에서 나아가 중소기업 중소기업을 분리한 후 소기업에 대해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만, 업종별 세액 공제율에 차등을 두는 것은 이미 규모별 세액 공제율의 차등을 통하여 보완되고 세제가 너무 복잡해지는 단점이 있어 추가적인 차등을 제안하지 않았다. 한편 회계에서는 산업안전을 위한 투자금액의 별도 표시 및 공시 제도가 미비함을 확인하였고, 회계 상 계정과목의 구분 표시나 주석을 통해 구분된 가액을 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으로 활용하여 세제의 적용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세법이 개선된다면, 안전과 관련된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안전보건 투자 세액공제, 산업안전보건법, 공시 제도, 소기업, 산업재해

* 본 논문은 저자들의 연구보고서인 “기업의 규모 업종별 안전보건투자에 따른 세액공제제도 개선방안”,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15)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chjshim@konkuk.ac.kr, 주저자

*** 수원대학교 경영학부 조교수, jekoo@suwon.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일 2016년 4월 12일 1차수정일 2016년 9월 8일 2차수정일 2016년 11월 21일

게재확정일 2016년 12월 13일

I. 서 론

구미 불산 누출사고, 경주 마우나 리조트 천장 붕괴 사고,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 사당 체육관 천장 붕괴 사고 등 최근 몇 년 동안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2015년 예산안에서 중점 추진과제의 하나로 “안전사회 구현”을 제시하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 예산에 ‘안전 예산’을 별도의 항목으로 신설하였다. 안전 예산은 예산 항목 중 2014년 예산안 대비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이는 항목으로 2015년의 안전 예산은 전년 대비 2.2조원이 증가하였고 비율로는 17.9%가 증가하였다. 2014년 대비 2015년의 예산 증가율이 5.7%인데 비하여 안전 예산 증가율은 17.9%로 안전 예산 지출액의 증가율이 총 지출 증가율의 3배에 육박한다. 이는 정부가 안전에 대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안전설비 투자 세액공제는 조세지출 실적이 많지 않고, 이는 환경설비 투자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의 환경설비 투자 세액공제와 비교하면 더 명확하다. 2013년 실적 기준으로 안전설비 투자 세액공제에 비하여 환경설비 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금액이 약 5배 정도 많다.¹⁾ 이러한 차이는 2014년 잠정 기준으로 약 5.5배로 증가하였다가 2015년 약 3.6배로 축소되었다.

2013년을 기준으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적용 사업장 1,977,057개소에 종사하는 근로자 15,449,228명 중에서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자가 91,824명이 발생(사망 1,929명, 부상 82,803명, 신체 장애자 35,490명, 업무상 질병 이환자 6,788명)하였고, 전체 근로자 수 대비 재해자 수의 비율인 재해율은 0.59% 이다. 2012년을 기준으로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적용사업장 1,825,296개소에 종사하는 근로자 15,548,423명 중에서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자가 92,256명이 발생(사망 1,864명, 부상 83,349명, 신체 장애자 37,323, 업무상 질병 이환자 6,742명)하였고, 전체 근로자 수 대비 재해자 수의 비율인 재해율은 0.59%였다. 2012년도에 비하여 2013년에는 사업장 수가 8.31% 증가하였고, 근로자 수 및 재해자 수가 각각 0.64%, 0.47% 감소하여 재해율은 2012년과 같은 수준이다.²⁾

전체 재해율은 큰 차이가 없지만 산업재해는 사업장의 규모별로 많은 차이가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재해율 분포가 34.08%로 가장 높고 10인~29인 사업장에서의 재해율 분포가 23.16%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29인 이하 사업장에서의 산업 재해율은 전체의 약 74%를 차지하고 있고, 49인 이하 사업장에서의 산업 재해율은 81.5%, 99인 이하 사업장에서의 산업 재해율은 전체의 약 88.54%를 차지하며, 299인 이하 사업장에서의 산업 재해율은 전체의 약 94.54%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재해의 대부분은 299인 이하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

1) 국회, 2015년도 조세지출예산보고서에 의하면 2013년 실적기준으로,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조세지출은 149억원이고 환경보건시설 투자에 대한 조세지출은 733억원이다.

2) 2013 산업재해 현황분석 참조(고용노동부, 2014.11)

고, 산업 재해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소규모 사업장 등 규모별로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2013년도 산업재해의 업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기타 산업의 재해자 수 비율이 전체 재해자 수(91,824명)의 36.54%(33,554명)로 가장 높고, 제조업이 32.05%(29,432명)로 그 다음이며, 건설업이 25.70%(23,600명), 운수·창고·통신업이 4.62%(4,240명), 광업이 1.00%(921명), 전기·가스·수도업이 0.08%(77명)의 순서로 나타났다. 2012년의 전체 재해자 수 대비 업종별 재해자 수의 비율도 기타산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창고·통신업, 광업, 전기·가스·수도업의 순서로 나타나, 2013년의 업종별 재해자 수 비율과 동일한 순서이다. 이는 업종별로 큰 변화 없이 지속되고 있기에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업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사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전과 관련된 설비의 투자를 일정 수준 유지할 필요가 있다. 경영자는 긴급한 현황에 대해서는 바로 대처하지만 안전과 같이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는 것은 의사결정에서 차 순위로 하게 된다. 안전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기업의 이미지 및 기업가치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안전과 관련된 투자 내역을 감사보고서 주석에 별도 공시하여 경영자로 하여금 안전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고 기업의 이미지 및 기업가치를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는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 목적으로 첫째, 안전설비 투자 세액공제 중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설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둘째, 안전설비 투자 등 세액공제가 공제율, 적용대상 측면에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셋째, 안전설비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세액공제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지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연구 목적을 충족하기 위하여 제 I 장 서론에 이어 제 II 장에서 선행연구를 검토한 후 제 III 장에서 우리나라와 EU 국가를 중심으로 안전관련 지원제도를 기술한다. 이 후 제 IV 장에서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제 V 장에서는 안전설비 투자의 증가에 따른 편익과 비용 분석을 통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 VI 장에서는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고 후속 연구방향 및 한계점을 제시한다.

II. 선행연구

이 장은 안전보건 관련 투자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 후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차이점을 언급한다.

1. 안전보건에 대한 세제 관련 연구

Toren and Stemer(2003)에 따르면 정부는 회사가 안전 및 보건에 좀 더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

할 수 있는 과세조치를 제시하였다. 과세조치는 어떤 기업이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좋지 않은 사례가 되면 처벌적 성격으로 할 수도 있고 좋은 사례가 되면 세액공제 등의 보상적 성격으로 할 수도 있다. 전자의 대표적인 예가 러시아에서 흰 아인산(White Phosphorous)에 대하여 중과하는 것이다. 후자의 대표적인 예로 스위스 연방정부는 어떤 기업이 작업장의 신체적이고 문화적인 활동에 투자하면 세금을 감면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Paton(2007)은 세액감면 조치와 같은 경제적 혜택이 기업들이 작업장에 대한 안전과 보건에 투자하도록 동기화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영국 재무부(UK Treasury)는 경제적 혜택이 기업들을 동기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확신을 하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결과는 과세 이익이 있는 기업에 한정된 결과이며 투자한 연도에 이익이 없거나 비영리기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과 보건을 위한 유인책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2. 안전 관련 투자 효과 등에 대한 연구

국내 선행연구 중 박종근 외 2인(2004)은 건설업에 한정하여 건설 공사의 안전 투자비를 분석하였다. 건설업, 토목 건설업의 경우 시설 및 장비 투자비와 인력 유지비의 86% 이상을 산재예방에 투자하고 있고, 재해손실 비용 중 직접비와 간접비³⁾의 비율은 건설업은 1 : 3.1, 토목업은 1 : 2.8인 것을 확인하였다.

오원기 외 7인(2008)은 제조업에 한정하여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비용을 파악하였다.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평균 1,690만원에 근로자 1인당 평균비용은 99만원이었고, 근로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장은 각각 10,157만원, 87만원, 근로자 300인 이상의 경우 322,189만원, 177만원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규모가 증가할수록 산업안전보건 비용 중 산재 보험료가 차지하는 크기가 감소하였고 상대적으로 산재예방 투자비용의 크기가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김태구 외 5인(2004)은 조선업에 한정하여 안전보건 투자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연구 결과 3년간의 매출액에 비례하여 산업안전 보건 관리비 투자 총액이 증가하였지만 생산 가동율이 증가한 만큼 재해율 역시 높아졌다고 분석하였다. 이때 산업안전보건 예산 총액은 75~86억원 수준으로 전체 예산의 2~2.5%를 차지한 것으로 상당한 수준의 안전보건 예산이 수립되어 투자되고 있지만 투자비용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재해 발생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 원인에 대하여 투자비용 중 개인 보호구 및 안전보건 장구의 구입비 등이 차지하는 비용이 크지만 재해 요인을 분석한 결과 추락, 협착에 의한 재해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비용의 투자가 실질적인 재해예방이 필요한 부분에 투자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비용편익 분

3) 직접비 항목은 치료비, 장해 보상비, 유족 보상비, 장례비, 기타 비용이 이용되었고, 간접비 항목은 물적 손실비, 생산 손실비, 임금 손실비 및 기타 비용이 고려되었다.

석에 대한 결과는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예산 투입이 적정한 수준에서 투자되고 있으나 사고의 원인과 투자의 포인트가 적절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였고 이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투자 부분에 대하여 사고의 원인 분석에 따른 대책 선정과 이에 대한 유연하고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최재욱 외 6인(2003)은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개선을 위한 투자효과를 분석하였다. 전국을 5개 광역권으로 나누어 총300개의 사업장을 방문 조사하였고, 1,500개의 사업장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다. 투자 대상 중 리프트, 환경 개선지원, 프레스, 지게차, 집진기 순의 확대가 필요하고, 보호구, 드릴 카바, 안전모 등 기술적 어려움이 없는 간단한 구입이나 조절이 가능한 부분은 축소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Clean 3D 사업이 산업 재해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 299명의 98.66%가 다소 도움이 되거나 많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조성지원 사업은 근로자들의 근무 분위기 개선 및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향상에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Elsler et al.(2010)의 연구에 따르면, 보상 제도를 사용한 유럽의 국가들은 작업 환경 개선으로 인한 결근율 감소와 재해율의 감소를 통하여 4.81유로를 절감했다고 보고했다.

위 선행연구는 현황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현황에 대한 연구도 특정 업종인 건설업, 조선업 등에 한정되어 있고 설문조사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한계는 있지만 안전보건에 대한 투자는 사고자 수 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세제지원 시 대상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안전보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에 대하여 연구된 국내 선행연구는 없었다. 참고 목적으로 다른 세액공제 제도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본 바, 세액공제 제도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한 선행연구와 세액공제 제도에 대한 문헌 분석을 한 선행연구가 있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세액공제가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투자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에서 공통된 결과를 도출하고 있지 못했다.⁴⁾ 한편 문헌 분석을 한 선행연구 중 이영숙(2013)

4) 윤영선·윤태화(2011)은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중심으로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가 설비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고, 설비투자는 임시투자 세액공제와 유의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송종국(2007)은 R&D 투자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대기업의 경우 매출액의 증가, 정부의 직접 보조금 및 조세지원 증가에 대하여 R&D 투자를 증가시키는 행태를 보였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매출 및 정부의 조세지원에 대하여 소극적인 행태를 보였다.

원종학·김진수(2006)는 조세지원 제도가 연구개발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매출액 및 세액공제가 연구개발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고, 특히 대기업에서 그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의 투자관련 조세지원 제도의 문제점 중에는 안전설비 투자 세액공제의 공제율이 낮아 실효성이 저해되는 점을 지적하였다.⁵⁾ 안전보건에 대한 세제관련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해외 선행연구가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면 안전 및 보건에 투자한다는 긍정적 결과를 보고한 경우가 있기는 했지만 국내 선행연구는 이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는 국내 안전보건 투자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안전설비 투자의 증가에 따른 세수의 순 편익을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III. 우리나라와 EU 국가의 제도

우리나라의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와 EU를 중심으로 한 외국제도를 간략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의 안전설비 투자 세액공제 제도

가. 안전설비 투자 세액공제 제도의 목적과 공제 대상자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투자촉진을 위한 세제 중 하나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의한 경쟁력 제고와 국민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기반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정책 지원 측면에서 도입되었다. 이는 종래의 특정 업종별 감면 위주의 지원제도는 줄여나가는 대신 우리 산업의 전반에 걸쳐 공통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문에 대해 특정 업종에 관계없이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안전설비 투자 세액공제는 안전설비에 투자하는 투자자가 안전설비에 더 많은 투자를 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업종에 대한 조세혜택을 축소하고 안전설비 투자라는 공통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세액공제의 대상자는 안전설비에 투자하는 사용자이며, 기본통칙 5-0...4의 규정과 같이 특정설비나 시설의

5) 이영숙(2013)은 우리나라의 투자지원 조세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주요국의 제도와 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투자세액 공제제도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주요국의 경우 투자 세액공제보다는 특별상각 제도를 많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고용창출 투자 세액 공제율이 기업 규모별로 5~7%인데 반해 생산성 향상 시설과 안전설비 투자 세액공제의 공제율은 3%로 낮아 실효성이 저해되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흥근(2002)은 관광호텔의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가 상시적으로 시행될 필요성이 있으며, 세액공제의 범위도 조정 공사비와 같은 취득세 적용배제 대상에 대해서도 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문점식 외 2인(2009)은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주요국의 제도를 비교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제지원과 관련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소유자가 그 시설의 사용자이거나 시설에 의한 효용의 이용자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나. 안전설비 투자 등의 종류와 범위

법에서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안전설비 투자 등의 종류를 소방시설, 유통산업 합리화 시설, 위탁 기업체가 수탁 기업체에 설치하는 시설, 산업재해 예방시설 및 가스안전 관리시설, 광산 보안시설, 비상대비 자원관리를 위한 보강·확장시설, 위해요소 방지시설, 기술유출 방지 설비 및 해외자원 개발 설비의 9가지 기능 분야를 열거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비의 범위는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안전설비에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물리적인 안전설비와 관련이 없는 유통산업 합리화시설, 위탁 기업체가 수탁 기업체에 설치하는 시설, 기술유출 방지설비 및 해외자원 개발 설비도 포함된다. 본 연구는 산업재해 예방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혜택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의 대상 중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되는 산업재해 예방시설로 범위를 축소하고 이에 한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에서 규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시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 예방시설,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 공급시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시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 안전 관리시설이다. 산업재해 예방시설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 예방시설로서 사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계·기구의 방호시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산업재해 예방시설이다. 이 경우 프레스·절단기·목재 가공용 둥근톱·로울러 및 양중기로서 해당 기계·기구의 방호시설의 가액이 해당 방호시설이 완비된 전체 기계·기구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전체 기계·기구를 산업재해 예방시설로 본다.

별표 4를 제시하고 있는데, 별표 4에 포함된 산업재해 예방시설의 범위는 동력차단 장치, 프레스 또는 절단기의 방호장치, 연삭기의 방호장치, 목재 가공용 둥근톱의 방호장치, 동력식 수동 대패의 방호장치, 로울러기의 방호장치, 잠금장치, 섯틀 빠짐 방지장치, 양중기 등의 방호장치,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의 방호장치, 교류 아아크 용접기의 방호장치, 국소 배기장치 등, 가스검지기 등, 작업환경 측정기기, 소음방지 장치, 시험전원 차단장치, 정전 작업 및 활선 작업의 절연용 방호구와 활선작업 용기구, 화학설비, 추락방지시설, 기타 중 일정 범위이다.

다. 규모별 세액 공제율의 차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는 적용 대상자를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 외의 일반기업으로 나누어 세액 공제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즉, 법에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 그 외의 일반기업은 투자금액의 100분의 3, 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

분의 7을 적용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기술유출 방지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업종기준, 규모기준,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한 기업을 의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에 중소기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소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업종 기준, 규모 기준,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2. 외국의 제도

미국과 일본은 안전투자 관련 세제지원에 대한 세법 규정은 없고 EU국가에서도 안전투자와 관련된 세제지원은 많지 않다. 본 연구는 재무적 보상에 해당하는 세제지원과 비 재무적 보상에 해당하는 공시를 통한 안전한 기업이라는 이미지 제고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범위를 확대하여 회사가 종업원의 안전을 위해 투자하는 경우에 제공할 수 있는 보상 제도를 EU국가 위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안전투자에 대한 혜택

EU의 국가들은 회사가 종업원의 안전을 위해 투자하면 다양한 종류의 경제적 보상을 하고 있다. 경제적 보상은 보조금, 세금 우대조치, 금융대출 우대조치, 우수기업에 대한 낮은 보험료 적용 등을 들 수 있다. 유럽의 작업장 안전보건 위원회(European Agency for Safety and Health at Work, 이하 EU-OSHA라 함)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외부적인 경제적 보상이 위험예방을 위한 투자를 하도록 하는 유인이 될 수 있고 모든 조직에 대해 사고율을 낮출 수 있다고 한다.⁶⁾ 유럽의 국가가 적용하고 있는 지원제도의 종류는 다음의 다섯 종류가 있다.

(1) 보험료 인하⁷⁾

보험료는 작업장 사고나 질병, 부분의 위험, 훈련·투자·인적 보호조치와 같은 예방활동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경험율에 근거하여 지원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으므로 순수한 경험율 접근방법보다는 노력에 근거한 혜택제도가 보다 효과적이다. 또한 중소기업은 보건 및 안전 활동과 보상 간에 직접적인 연결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독일 도축업 사고보험에 대한 혜택제도에 따르면 이 제도는 예방조치에 참여하는 회사들에게 보험료를 낮춰주는 방식이었으며, 보험료율에 5%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

6) How to create economic incentives i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 A practical guide, EU-OSHA — European Agency for Safety and Health at Work, 2012, p.6

7) Economic incentives to improv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 a review from the European perspective, EU-OSHA — European Agency for Safety and Health at Work, 2010, p.208

었다. 2008년에 40개 정도의 회사가 여기에 참여하였고, 2001년에 1,000명 정규직 노동자에 대하여 92건에 달했던 사고가 6년 동안 비 참여 그룹(78건/1,000명)에 비하여 참여그룹(65건/1,000명)에서 더 많이 감소하였다. 이는 비용-효익 분석에 따르면 보험회사에게도 이익이 된다.

(2) 보조금⁸⁾

안전에 대한 혁신적인 투자나 재조직을 위한 보조금은 모든 EU국가에 존재하는 지원제도이며 사회보장 시스템과는 독립된 별도의 제도이다. 보조금 제도는 특정한 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목표를 가진 경우에 유용한 방법으로 이런 종류의 지원제도는 회사의 크기나 분야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노력과 보상 간의 관계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고, 노력을 했으나 보상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네덜란드는 보건 및 안전에 대한 보조금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1999-2007)는 질병 감소와 작업장 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정부-근로자 및 회사가 분야별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보조금에 투자된 전체 예산은 303백만 유로이며 이 중 55%가 사회적 파트너에게 제공되었고 45%는 사회복지부에 남아있다. 전체 67개 분야에서 약정이 공표되어, 네덜란드 전체 작업장의 50%가 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3) 조세 지원

EU에서는 안전 및 보건에 대한 가속상각과 같은 세무 상 지원제도가 많지 않다. 정부가 보건 및 안전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를 희망하고 대다수의 기업에 그 지원의 혜택이 가기를 희망하는 경우에 조세지원 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조세지원 혜택의 허용은 네덜란드의 Farbo 제도처럼 보건 및 안전 활동, 설비투자과 같이 열거된 항목에 근거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해야 노력과 보상을 명확하게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의 노력을 촉구할 수 있다. 조세지원 제도의 단점은 세금을 내는 조직에 혜택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부문이나 비영리 조직에는 적용될 수 없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게 됨에 따른 손실인 자중 손실(dead weight loss)과 예산의 제약이 있다. 예로는 라트비아에 노동자 보호 조치에 대한 일반적 지출은 세금을 면제하는 제도가 있고, 독일에 2009년에 도입되었던 작업장 보건 촉진을 위한 세금 혜택이 있다.⁹⁾ 또한 네덜란드에 Farbo제도는 처음에는 조세지원 조치였으나 2005년에 보조금 제도로 변화되어 2009년에 폐지되었다. 조세지원 제도는 기술 장비에 초점이 맞춰지지만 훈련 과정이나 보건 및 안전 관리 시스템의 이행도 이 제도에 통합될 수 있다.

추가적으로 EU 외의 국가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을 살펴본 결과, 미국은 안전설비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에 대한 정보는 찾을 수 없었다. 다만, 납세자는 광산의 적격 안전장비에 대하여 구입한 해에 원가의 50%를 즉시 상각하여 비용 화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으나, 2013년 12월

8) Veerman(2010)는 EU-OSHA의 세미나에 제출된 자료임

9) 이는 고용주가 작업장 보건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에 대하여 매년 세금으로부터 작업자 1인당 500유로를 세액공제하는 제도이다.

31일 이후 구입하는 분부터 이도 적용할 수 없다.¹⁰⁾ 그리고 일본도 안전설비에 대한 투자 세액 공제에 대한 정보는 찾을 수 없었지만, 조세특례조치법 제43조의2 내진기준 적합 건물 등의 특별상각을 두어 취득원가의 25%에 대한 특별 상각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가 있다.¹¹⁾ 한편 중국은 법인세 계산 시 안전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기술적인 비용을 당해 과세기간에 공제하고, 벨기에는 법인세 계산 시 중소기업이 안전을 위한 조치에 투자한 경우 20.5%를 공제한다. 이러한 공제는 투자를 한 연도와 그 다음연도에 가능하다.

(4) 은행대출 조건의 개선

은행 대출시 낮은 이자율이 적용되도록 하는 은행대출 조건 개선은 보건 및 안전 실무에 기업의 레버리지 개선 효과를 위해 도입한 지원제도이다. 특정 장비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 자금을 대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은행대출이 쉽지 않은 중소기업 등에 보다 적합한 제도이다. 이 방법은 은행이 그들의 고객인 회사들의 안전 및 보건 활동에 관심을 갖도록 하여 회사의 일반적인 위험관리에 공헌한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 노동자 보상기관이 소기업들에게 안전 및 보건에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회사 은행대출을 지원한 후에, 이 제도에 참여한 회사들의 작업장 사고나 13~25% 감소하였다는 보고가 있다.

(5) 비 재무적 보상

안전 및 보건 관리 시스템에 대한 보증제나 상을 주는 비 재무적인 혜택은 재무적인 보상은 없지만 회사의 명성을 향상시킨다. 예로서 독일은 BGW 보건 상, ‘예방혁신’, ‘건강한 근로자—건강한 회사’와 같은 수상이 있으며, 벨기에는 안전을 위한 예방 상(Pro-Safe Award)이 있으며, 덴마크는 일반 대중들이 그 기업의 보건 및 안전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레드·옐로우 왕관의 스마일을 부여하는 시스템이 있다. 폴란드는 작업장 상태를 향상시키는 국가적 대회와 기업대표 안전포럼이 있다.

나. 국가별 비교

EU의 개별국가가 선택한 안전과 보건에 대한 보험료 인하와 은행 대출조건 개선을 제외한 지원제도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EU의 개별국가 중 15개국의 지원제도를 정리하였고, 에스토니아, 그리스,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영국은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제도로 보험 할증료 등 보험제도에 대한 규정만을 가지고 있어서 <표 1>에 포함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관심대상이 되는 세무적 혜택은 기업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효과적이지만 많은 사례가 존재하지는 않았다.

10) IRC §179E

11) 일본 국세청

〈표 1〉 안전과 보건에 대한 EU 회원국들의 보험보상 외의 지원제도

국가	조세지원	보조금 제도	비 재무적 보상
벨기에	N/A	-요통 작업자의 조기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및 B형 간염이나 A/B 복합형 간염 백신에 대한 보조금 -경험 룰에 근거한 보조금 -안전 관리자 프로젝트(예방/경험 보조금)	-우수 안전사례 포상
불가리아	N/A	-작업장 상태 개선을 위한 보조금	N/A
덴마크	N/A	-예방에 대한 보조금 -안전 및 보건 컨설팅을 위한 보조금 -작업장 환경조사를 위한 보조금 <개정 전 지원제도> -단순·반복 작업을 위한 보조금 -지도향상을 위한 보조금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인증을 하는 기업에 대한 주 정부 보조금	-적색·황색·녹색의 왕관을 부여
독일	-작업장 보건촉진을 위한 과세혜택으로 고용주는 매년 종업원 1인당 500EUR 까지 납부세액에서 공제	-바이엔른 사업 감리단에 의한 보건 및 안전 관리 제도의 촉진 -IKK 노르트라인 건강보험회사에 의한 중소기업 사업장내 건강촉진 조치에 대한 보조금	-보건분야 법정사고 보험에 대한 보상제도 -함브르크의 보건 및 안전을 위한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의한 시상 -무역 및 물류에 대한 법정사고보험에 의한 시상 -채석장과 상해보험 조합에 의한 승인 및 체계적인 안전관리
스페인	N/A	-전통적인 연안 어선의 안전향상 보조금 -건설업 분야의 중소기업을 위한 안전장비 교체 보조금 -보건 및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 및 종업원 교육에 대한 지원 -작업장 보건과 안전을 향상하기 위해 투자하는 가스틸라라 만차(스페인 중부지방의 자치 공동체)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안전 및 보건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안전장비 및 기계의 리뉴얼, 구입, 적응을 위한 지원 -계획된 예방조치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지원 -표준화된 비계(scaffolding)를 위한 건설업 분야의 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작업장의 안전을 적절히 통제한 사례에 대한 기업지원 -안전 및 보건을 위한 정규직 기술자를 채용한 고용주를 장려하기 위한 보조금	N/A

〈표 1〉 안전과 보건에 대한 EU 회원국들의 보험보상 외의 지원제도 (계속)

국가	조세지원	보조금 제도	비 재무적 보상
프랑스	N/A	- 예방 계약, 선금 및 보조금(CNAM/CRAM) - ‘보다 안전한 도구’ 캠페인(CNAM) - 작업장에서의 보건계획 2005-2009	N/A
이탈리아	N/A	- 안전 및 보건을 위한 사업계획 프로젝트 - 사고감소에 도움을 주는 기술적인 혁신을 위한 중소기업 대출 - 사고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 보조금 프로그램	N/A
라트비아	- 근로자 보호조치에 대한 일반적인 지출은 손금산입	N/A	N/A
리투아니아	N/A	- 예방을 위한 보조금	- 공공분야에 기업참여 조건
룩셈부르크	N/A	- 기업의 교육훈련, 위험관리 소프트웨어의 구입, 안전관리설비에 대한 재무적 지원을 위한 사고관련 보험협회의 보조금	N/A
네덜란드	- Farbo제도	- Farbo제도 - 교육 및 개발을 위한 보조금	N/A
오스트리아	N/A	- 중소기업의 안전 및 보건 관리를 위한 저비용 컨설팅 - 보건촉진 활동의 펀드(Healty Promotion Fund, FGO) - 오스트리아 연방정부에 의한 IMS를 실행하기 위한 펀드	N/A
폴란드	N/A	- 폴란드 기업발전청과 폴란드 상업위원회에 의한 교육훈련과 중소기업을 위한 보조금 - CIOP-PIB와 국가 노동 감리단 : 체계적인 보건 및 안전 활동 촉진(교육훈련, 컨설팅, 감사)	- 국가적인 노동감리의 과정 ‘소기업의 작업장 안전’ - 안전작업에 대한 리더 포럼
슬로바키아		- 안전 기업 프로그램	
핀란드	N/A	- 핀란드 작업환경 보조금 - 작업장 생활의 발전을 위한 TYKES 프로그램 - TYTA 모델	- 사고제로 포럼 - 물류부문을 위한 작업안전 시상

한편 EU-OSHA의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적 지원제도를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점으로 다음의 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며, 본 연구의 대상인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도 경제적 지원제도의 일종이므로 여기에 소개한다. 첫째, 법적인 규제는 이를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경제적 지원혜택과 연결되어야 하고(Toren and Sterner 2003), 둘째, 정부가 조세관련 조치를 하는 것은

기업에 대해 처벌의 형태로 하는 것과 보상의 형태로 하는 것이 있고 모두가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으나 세금 혜택은 기업이 과세소득이 발생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만 효과적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셋째, 작업자에 대한 보상의 형태로 산업과 관련된 사고나 질병에 대한 순 현금 보상은 보험 관련 이익으로 최상의 선택이 아니다. 경험율이나 보험료율의 차등 적용 방법이 작업장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의 빈도 및 심각성을 낮추는데 더 효과적이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은 안전 및 보건에 대해 다른 방법 보다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사고율을 낮추는데 필수적이며, 중소기업이 안전 전문가나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주요국의 내용을 검토한 바 본 연구의 대상이 되었던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은 거의 없었으나, 우리나라의 안전에 대한 세제를 설계함에 있어서 세제 외의 관련 제도를 동시에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다. 또한 지원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되기 위해서는 지원의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하며, 중소기업은 특별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IV.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안전설비 범위의 적정성

가. 안전설비 투자 세액공제의 대상

혜택제도를 설계함에 있어서 첫 번째 출발점은 혜택의 범위에 대한 이해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제1항 제5호 산업재해 예방시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시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산업재해 예방시설과 가스 안전관리 시설, 유해 화학물질 취급의 안전시설이 있다. 안전설비 투자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산업재해 예방시설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규정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몇 조를 차용하고 있는지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납세자가 해당 조문을 적용하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산업재해 예방시설에 대한 정의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는 조문의 제목이 산업재해 예방시설이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1호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지도시설·연구시설 및 교육시설, 제2호에 의한 작업환경의 측정 및 안전·보건 진단을 위한 시설, 제3호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시설, 제4호에 의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따라서 사업주가 투자하는 안전설비와는 그 주체와 대상이 다르다. 제4호에 의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이 사업주가 투자하는 안

전설비와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 위임을 받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에 위임을 받은 시행규칙이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나 관련 규정을 찾을 수 없었다. 한편 시행규칙의 산업재해예방시설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으나 법을 넓게 해석하여 고용노동부령에 해당하는 시행규칙의 각종 산업재해 예방시설을 모두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제61조에서 해당 시설의 주체는 여전히 고용노동부 장관이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개별 기업의 안전설비를 투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으로 차용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의 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정의를 찾기 어려웠던 바, 두 법의 관련성을 높이는 대안을 찾고자 역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별표 4의 산업재해 예방시설을 대상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 설비가 규정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조세특례제한법」 별표 4를 최초로 차용하였던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련 규정과 연결하여 보면 다음의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장치)에서 규정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로 분류된 경우이다. 예를 들면 동력차단 장치 중 접촉예방 장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의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동력전달 부분 및 속도조절 부분에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하라는 규정과 관련된다. 또한 절단기의 방호장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의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금속절단기에 날 접촉 예방장치와 관련된다.

둘째,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이다. 예를 들면 롤러기는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프레스의 방호장치, 양중기 등의 과부하 방지장치,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 장치용 안전기, 교류 아아크 용접기용 자동전격 방지기는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다.

셋째,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자율안전 확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이다. 예를 들면 연삭기, 둥근톱, 대패는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5에 규정되어 있다.

넷째,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안전검사)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이다. 예를 들면 국소 배기 장치가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6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다섯째,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잠금장치, 셔틀빠짐 방지 장치, 동력차단 장치가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별표 4는 「산업안전보건법」 중에서 제33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제34조(안전인증), 제35조(자율안전 확인), 제36조(안전검사)의 대상을 참조하여 그 중 일부를 포함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바가 없는 잠금 장치, 셔틀 빠짐 방지 장치, 동력차단 장치의 안전장치도 별표 4에 포함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 예방시설 중 「조세특례제한법」의 별표 4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엄격한 의미에서 잠금장치, 셔틀 빠짐 방지 장치, 동력차단 장치는 안전설비 투자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더불어 「조세특례제한법」의 별표 4의 최근 개정일은 2008년 4월 29일인데 비하여, 예를 들어 관련규정인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중 대상 기구·기계의 최근 개정은 2013년 6월 12일이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련규정이 몇 차례의 개정을 거치는 동안에도 「조세특례제한법」의 별표 4는 개정되지 않아서 「조세특례제한법」의 별표 4가 관련법의 최신 개정내용을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좀 더 세밀하게 연결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관련법의 인용에 따른 문제 뿐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의 별표 4의 적용 가능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적용 가능성은 실제 대상 기구로 판단된 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실무상의 문제이다. 예를 들어 프레스를 구입하는 업체가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노동부 장관의 성능 검사에 합격한 프레스를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세액공제의 대상은 프레스의 방호장치인 바, 프레스 가액 중 금형 또는 칼날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장치의 가액만을 분류하여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결국 법의 적용 가능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부분은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안전설비를 규정하는 방식인데, 별표 4는 안전설비를 기계·기구의 명칭을 중심으로 정하고, 대상이 되는 기계·기구도 전체 기계·기구의 일부에 해당하는 방호장치에 한정하여 방호장치만의 가액을 구별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나. 개선방안

안전설비의 범위에 대한 문제점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 관련법과의 관련성 미비와 둘째, 적용대상의 제한에 따른 가액결정의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다.

관련법과 연결시키는 방법을 참고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위임 행정규칙인 「산업재해 예방시설 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 사업 운영규정」을 살펴본다. 행정규칙 제6조의 융자 대상자를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고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를 제조·사용하려고 하는 자로 규정하여 안전설비 투자를 하는 주체가 되는 사업주에게 혜택을 부여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과 그 수혜자가 동일하다. 이 때 융자대상 상품을 규정한 제7조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의 안전조치, 제24조의 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 제1항 제2호의 기술상의 지침 또는 작업환경의 표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계·기구 및 설비, 제33조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장치 및 방호조치, 제34조의 안전인증 및 제35조의 자율안전 확인의 대상이 되는 기계 등에 대한 방호장치 및 방호조치, 해당 기계 등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그 기계·기구 등이 포함된다.

첫 번째 문제점의 개선안은 준용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산업재해 예방시설을 별도로 정의하거나 현재 별표 4에 규정된 설비들이 포함된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을 직접 연결하는 방법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산업재해 예방시설에 대한 별도의 정의를 규정할 경우 산업재해 예방시설이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될 가능성이 있고, 환경설비투자 세액공제와 같이 특정기술을 사용하는 시설로 한정하기도 어려운 바, 「산업재해 예방시설 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 사업 운영규정」에서 규정한 방식과 유사한 방식을 제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현재와 같이 별표 4와 연결하면서 별표 4에서 관련법과의 관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면, 첫 번째 대안은 현재 별표 4에 산업재해 예방시설 자금 융자 및 운영규정 제7조의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이다. 기본 별표 4에 <표 2>와 같이 21. 22가 추가되는 형태가 될 것이다. 이 대안은 산업재해 예방시설 자금 융자도 안전보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세액공제 항목을 융자 대상 항목과 일치시킴으로써 기업의 안전보건 투자행위를 보다 정확히 관측할 수 있고, 세액공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21.과 22.의 규정이 1.~20.의 내용과 중복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이 별표 4에 바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운영규정을 통해 반영된다는 단점이 있다.

〈표 2〉 별표 4의 대안 1

구 분	적용범위
1~20. 기존 별표 4와 동일 (중략)	기존 별표 4와 동일 (중략)
21. 운영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4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주가 안전 또는 보건상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업재해 예방 시설 및 장비
22. 운영규정 제7조 제1항 제3호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과 영 제27조부터 제28조의5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이하 “유해·위험기계”라 한다)에 대하여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

두 번째 대안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현재 별표 4를 추가하는 방안이다. 개정되는 별표 4는 <표 3>과 같은 형태가 될 것이다. 이는 현재 별표 4를 산업안전보건법을 중심으로 관련 장치를 분류하여 재편성하였고, 현재 별표 4에 포함되었으나 산업안전보건법과 연결되지 못한 장치에 대해서는 6.~11.에 정리하였다. 이 대안은 다른 대안에 비하여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연계가 분명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관련 규정인 산업재해 예방시설 자금 융자대상과는

일치되지 못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두 제도를 별도로 이해하고 적용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표 3〉 별표 4의 대안 2

구 분	적용 범위
1.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의 안전조치의 대상이 되는 위험예방설비	- 화학 설비 중 온도 경보시스템, 압력 경보시스템, 레벨 경보 시스템, 교반기 경보장치, 긴급차단 장치, 압력방출 장치 및 누출방지 장치, 역화 방지기(프레임 에레스터) - 화학설비 공장 등 폭발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전기기기·배선 및 공구와 폭발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격벽 - 감전사고 방지용 및 시험전원 차단용 장치 - 감전 방지용 누전차단 장치 - 공업용 가열로의 연소 설비용 안전장치
2.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의 보건조치의 대상이 되는 건강장해 예방설비	- 유기용 제증기의 발산원 밀폐설비·국소박이 장치 또는 전체 환기 장치 - 분진 제거를 위한 국소박이 장치·전체 환기 장치 및 제진·집진 장치 - 유기용제·특정 화학물질 기타 유해 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설치하는 전체 환기 장치·국소배기 장치 및 공기정화 장치 - 폭발성 가스검지기 및 경보장치 - 목재 가공용 둥근톱의 소음방지 장치 - 동력으로 운전하는 장치의 소음발생 방지장치 - 소음방지를 위한 격벽 등 방지시설
3.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장치	- 예초기의 날 접촉 예방장치 - 원심기의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 공기압축기의 압력방출 장치 - 금속절단기의 날 접촉 예방장치 - 포장기계의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 고무·고무화합물 또는 합성수지를 인화하는 로울러기의 급정지 장치 - 지물 또는 포물 등을 통하게 하는 로울러기의 안전장치 - 로울러기의 접촉예방 장치
4.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 안전 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의 방호장치	-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 크레인 등의 양중기·권양기 또는 인양기의 과부하 방지 장치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성능 검정에 합격한 것 - 보일러 압력 방출용 안전밸브 - 압력용기 압력 방출용 안전밸브 - 압력용기 압력 방출용 파열판 -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 작업용(活線作業用) 기구 - 방폭구조(防爆構造)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표 3〉 별표 4의 대안 2 (계속)

구 분	적용 범위
4.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 안전 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의 방호장치	-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 자재로서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 및 통로 등의 추락방지 핸드레일 및 가드레일, 안전블록, 자동원치
5.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의 자율안전 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방호장치	- 분쇄기의 덮개 또는 연동장치 - 제면기의 실린더커버 - 컨베이어의 급제동 장치 -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 장치용 안전기 -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 방지기 - 롤러기 급정지장치 - 연삭기(研削機) 덮개 등 방호장치 -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 산업용 로봇 안전매트 -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 기자재 (4호에 포함되는 것은 제외)로서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 및 통로 등의 추락방지 핸드레일 및 가드레일, 안전블록, 자동원치
6. 동력차단 장치	- 동력으로 운전하는 기계의 동력차단 장치 및 접촉예방 장치
7. 잠금 장치	- 면사방직 기계에 있어서 황타면기의 실린더 커버 손잡이 및 타면기의 비타 커버 - 견사방직 기계에 있어서의 타면기의 실린더 커버
8. 셔틀빠짐 방지장치	- 직기에 있어서 셔틀의 빠짐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9. 양중기 등의 방호장치	- 양중기·권양기 또는 인양기의 권과방지 장치·최종통제 스위치·조속기·완충기·비상멈춤 장치 및 출입문 인터록
10. 작업환경 측정기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 측정용 장치
11. 기타	- 원심 분리기·원심 탈수기·원심 주조기·원심 분쇄기 및 원심 혼합기 등에 설치된 덮개 또는 연동장치

첫 번째 문제점이었던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련성 미비는 대안 2를 통하여 가장 잘 보완될 수 있으며, 이러한 대안은 안전보건 시장의 수요공급 불균형을 해소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제35조와 같이 제조업자에게 안전을 위

한 인증을 하도록 하는 설비와 이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세액공제를 연결하여, 수요자가 안전인증 등을 받은 설비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면, 공급자 매출을 증가시켜서 안전보건 시장의 수요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¹²⁾ 또한 이러한 개정을 통하여 별표 4가 개정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련 기계·기구의 내용이 개정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편, 대안 1은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21.과 22.의 규정이 1.~20.의 내용과 중복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고시로 운영되는 용자대상으로 시행규칙을 규율하는 것은 법구조상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 문제점은 적용대상의 제한에 따른 가액결정의 어려움이었다. 즉, 환경설비투자 세액공제는 특정기술을 적용하는 설비자체가 전부 대상이 된다. 앞선 예에서 중력 집진시설, 관성력 집진시설 등과 같이 특정 기술을 적용하는 설비 자체가 전부 대상이 된다. 이에 비하여 안전설비 투자 세액공제는 기계·기구의 명칭을 중심으로 대상을 정하고 대상이 되는 기계·기구도 일부에 해당하는 방호장치에 한정한다. 이는 환경설비 투자의 세액공제에 비하여 안전설비 투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어렵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이는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기업이라면 당연히 부담해야 납세비용이라고 판단된다. 물론 이러한 납세비용은 납세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이 회계처리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별도의 납세비용을 부담하지 않고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무적으로는 방호장치만 별도로 구입하기 보다는 방호장치가 포함된 기계·기구를 구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해당 기계·기구와 방호장치를 상대적 공정가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주석에 기재하고, 해당 주석에 내용을 참고하여 방호장치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의 개선안은 세액공제제도의 개선에 있다기보다는 회계에서 해당 가액을 구별하여 주석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시행규칙을 <표 4>와 같이 개정하여 회계 상 구분공시가 되는 경우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회계제도를 통한 구분공시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12) 전용일(2014)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 서비스에 대한 전체 공급시장의 규모는 5,586억원이며 전체 수요시장의 규모는 최소 1조 4,776억원, 최대 2조 9,744억원으로 예측되고 있다. 안전보건 시장은 수요공급이 불균형하며, 이에 대한 원인은 시장 주체들이 자율보다는 정부 주도 하에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면서 시장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시장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기업에게는 적절한 가격을 지불하고 안전보건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 서비스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강제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제대로 된 가격을 지불한 질 좋은 안전보건에 대해서는 더 높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방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표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13조(안전시설 등의 범위) ② 영 제2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시설은 사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계·기구의 방호시설로서 별표 4의 산업재해예방시설로 한다. 이 경우 프레스·절단기·목재가공용 둥근톱·로울러 및 양중기로서 해당 기계·기구의 방호시설의 가액이 해당 방호시설이 완비된 전체 기계·기구 가액의 100분의3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전체 기계·기구를 산업재해예방시설로 본다.	제13조(안전시설 등의 범위) ② 영 제2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시설은 사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계·기구의 방호시설로서 별표 4의 산업재해 예방시설로 한다. 방호장치 등은 별도 계정과목 또는 주석으로 구분공시하고, 프레스·절단기·목재가공용 둥근톱·로울러 및 양중기로서 해당 기계·기구의 방호시설의 가액이 해당 방호시설이 완비된 전체 기계·기구 가액의 100분의3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전체 기계·기구를 산업재해 예방시설로 본다.

가액에 대한 구별이 어려운 경우라 하더라도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 등 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두 가지의 세액공제에 모두 적용되는 경우에는 방호장치는 공제율이 높은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중복적용을 배제한다.

2. 규모별 세액 공제율의 적정성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나누어 100분의 7, 100분의 5, 100분의 3으로 차등적용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세액 공제율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나누어 100분의 10, 100분의 5, 100분의 3으로 차등적용하고 있다. 즉,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세액 공제율에 비하여 중소기업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혜택을 주고 있다.

2013 산업재해 현황 분석(고용노동부, 2014.11)의 자료에 의하면 29인 이하 사업장에서의 산업 재해율은 전체의 약 74%를 차지하고 있고, 49인 이하 사업장에서의 산업 재해율은 81.5%, 99인 이하 사업장에서의 산업 재해율은 전체의 약 88.54%를 차지하며, 299인 이하 사업장에서의 산업 재해율은 전체의 약 94.54%를 차지하고 있다. 즉, 기업의 규모별로 산업 재해율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규정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나누어 세액 공제율을 달리 하고, 특히 2014년 12월 23일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중견기업 구간을 신설하였다. 소규모 사업장 전체에 대한 평균 매출액 자료는 없지만, 대략적인 수준을 가늠하기 위하여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제조업을 대상으로 한 소기업(종사자 5~49인)의 평균매출액

은 26.12억이다.¹³⁾ 49인 이하 사업장은 산업 재해율의 81.5%를 차지하는 사업장으로서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세제의 효율성을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현재 세액공제의 대상자 분류와 비교하면, 현행 규정은 평균 매출액이 업종별로 최저 400억에서 1,5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이 아니면서 연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이하인 중견기업, 그 외의 대기업으로 나누어 세액 공제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제조업의 평균 매출액 수준과는 상당히 차이가 나므로 제조업에 한정한다면 안전관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기업에 비하여 상당히 큰 기업들이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어 혜택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안전관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종사자 기준이나 혹은 현재의 매출액 기준 보다 낮은 수준의 기준으로 소기업을 분리해내고, 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율을 보다 높이는 방안을 제안한다. 즉, 소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율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높은 재해율 등을 감안하여 세액 공제율을 10%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산업 재해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 재해율을 낮추고 안전설비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환경설비투자 세액공제의 세액 공제율과 비교하여 세액 공제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어디에 보다 비중을 둘 것이냐에 따라 결정할 문제이다. 즉 기능별로 해당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세지원을 하고 있는 바, 한정된 예산에서 어느 쪽의 조세지출에 더 많은 예산을 배분할 것인지는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인 것이다. 다만, 선행연구 및 EU-OSHA보고서에서 중소기업은 일반기업과 달리 안전에 취약하고 쉽게 움직여지지 않는 특성을 가지는 집단으로 분류되는 바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때 소기업은 건설업 등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는 등 산업재해의 특성을 반영하여 결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업종별 산업재해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는 세법을 복잡하게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기적으로는 관련법과 연계시키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리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판단과 유사한 형태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하고자 한다. 즉,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기업을 소기업으로 하고, 그 외의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을 소기업으로 본다.

3. 업종별 세액공제의 적정성

기타 산업, 제조업, 건설업 등이 높은 산업 재해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하여 차별적 세액공제를 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검토를 하면 다음과 같다. 업종별 차등 지원을 하는 근거는 첫째, 해당 업종이 더 많은 산업재해를 발생하기 때문이거나 둘째, 해당 업종이 더 많은

13) www.kbiz.or.kr/user/site/statsDB.do 중소기업중앙회 통계DB

안전투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일 것이다. 먼저 산업재해 발생과 관련해서는 이미 규모별 분류에서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규모에 세액 공제율을 높여 어느 정도 재해율을 낮출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판단되며, 이미 현행 세제가 한도 없이 안전설비 투자금액에 일정률로 조세 지원을 하고 있어 투자금액이 커지면 더 많은 조세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업종별 분류의 필요성에 의문이 있다. 또한 주요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특정 업종에 대한 지원은 도축업 정도에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업종별로 분류하여 지원정도를 달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미 현행 세제가 규모별로 분류하여 세액 공제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업종을 분류하고 특정업종에 세액 공제율을 달리 적용하게 되면 세제를 너무 복잡하게 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안전설비 세액공제는 업종별이 아닌 안전설비 투자라는 기능별 조세지원의 예이다. 조세지원의 방향이 업종별이 아닌 기능별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업종별로 세분화하여 재해 발생율이 높은 업종에 차등의 세액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식은 실현가능성이 낮다.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하면, 업종별로 세분화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서의 개정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4. 산업안전을 위한 투자금액의 구분 표시 및 공시제도 미비

산업안전을 위한 투자를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에 구분하여 표시되지 않고 별도로 주석에도 공시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경영자, 투자자, 채권자, 근로자, 국가 및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관심도가 낮아 산업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EU의 사례 중 은행대출 조건 개선은 은행으로 하여금 각 기업의 안전 및 보건활동에 대해 관심을 가지도록 함으로서 기업이 일반적인 위험관리를 하도록 하는 예이다. 공시도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의 안전 및 보건활동에 관심을 가지도록 함으로서 기업이 스스로 일반적인 위험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현행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이나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산업안전에 투자한 자산으로부터는 직접적인 경제적 효익이 창출되지 않으므로 산업안전에 투자한 금액은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주 설비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이 주 설비와 주 설비의 안전을 위해 투자한 금액보다 클 경우 주 설비의 안전을 위해 투자한 금액은 자산화시킬 수 있다. 현재는 안전을 위해 투자한 금액은 해당 주 설비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경영진에게 산업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을 위해 투자된 자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산업안전보건자산」으로 구분 기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구분 기재하기 위해서는 회사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투자에 지출된 금액은 「산업안전보건자산」 계정과목으로 공시해야 한다. 이러한 공시를 통해 기업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산업안전보건의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알리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현행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이나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기초 장부금액, 증가 내역, 감소내역, 기말 장부금액, 담보내용 및 유형자산 취득을 위한 약정액, 감가상각방법, 내용 연수 및 상각률, 회계추정이나 변경의 내용, 재평가 내역, 손상차손 내역, 운휴중인 자산, 상각이 완료되었으나 아직 사용 중인 유형자산의 총 장부금액 등을 공시하고 있지만, 산업안전보건에 투자한 내역에 대한 공시규정은 없다. 산업안전보건 투자에 대한 내역을 공시할 필요가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안전설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연결한다면 이를 검증하기 위한 국세청의 추가적인 행정비용의 부담없이 공정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안전보건투자와 관련된 투자금액과 비용지출 금액을 재무제표 상에 별도 구분표시 할 경우에만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는 방법과 안전보건 투자와 관련된 투자금액과 비용지출 금액을 주식으로 공시하는 경우에만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전자에 의할 경우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의하면 안전보건 투자와 관련된 투자금액이 주 설비투자 금액에 포함될 경우 별도로 안전보건 투자와 관련된 금액을 자산계정으로 구분 표시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후자와 같이 현행 안전보건 투자세액의 대상이 되는 지출금액을 주식으로 공시하는 경우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법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투자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기업들은 내부적으로 해당 지출 금액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으로 해당 내용을 공시하더라도 별도의 정보제공 비용이 증가하지 않으면서 경영자에게는 안전의식을 고취할 수 있다.

V. 안전설비 투자의 증가에 따른 편익과 비용 분석

1. 편익분석 : 재해자 수 감소에 따른 손실 감소액

편익은 안전설비 투자금액의 증가로 인해 재해자 수가 감소하고 해당 재해자 수의 감소에 따른 재해손실 감소액으로 추정한다. 즉, 안전보건 투자의 증가로 인해 사업장의 재해자 수가 감소하고 재해자 수의 감소에 따른 경제적 손실의 감소분을 의미한다. 이를 산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text{재해손실 감소액(편익)} = \text{안전보건 투자의 증가액} \times \text{재해자 수 감소(명)} \times \text{경제적 손실/1인당}$$

안전보건 지출액의 증가에 따른 재해자 수 감소를 추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안전보건 지출액의 증가에 따른 재해자 수 감소를 추정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투자금액의 증가분 대비 재해자 수의 감소비율을 이용하고자 하며, 재해자 수를 제시한 가장 최근 자료가 2013년이므로 2012년과 비교한 재해자 수의 감소는 432명이었다.¹⁴⁾ 즉, 2012년을 기준으로 한 안전보건 투자액이

14) 최근의 자료인 2013 산업재해현황분석(고용노동부, 2014)에 따른 것이며 해당 참고자료 p.49 현황 참조

자연 증가분인 5%¹⁵⁾가 증가할 때 재해자 수가 얼마나 감소하는지의 비율을 이용하여 세법 개정으로 안전 투자액이 증가할 때 재해자 수가 얼마나 감소하는지를 계산한다.

2012년의 안전보건 투자액은 2012년의 조세지출을 이용하였다. 즉, 2012년의 조세지출은 46억원인데, 이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누고 각각의 세액 공제율로 나눠서 안전보건투자금액을 산출하였다. 이렇게 산출한 2012년 안전보건설비 투자액은 1,515.81억원이다. 이 때는 세법 개정 등이 없었으므로 안전설비 투자가 자연 증가율인 5% 증가했을 것이라고 가정하여 안전설비 투자금액의 증분은 75.79억원이다. 따라서 안전보건 투자액의 증가에 따른 재해자 수의 감소는 75.79억원이 증가할 때 재해자 수는 432명이 감소하였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비율이 이용하여 2016년 투자금액의 증분에 대한 재해자 수의 감소를 추정한다.¹⁶⁾ 추정된 재해자 수의 감소에 대한 1인당 경제적 손실은 직접손실액에 간접손실액을 가산하여 계산한 것으로 구체적인 계산의 내용은 <표 5>와 같다.

<표 5> 산업재해자 1인당 경제적 손실규모

(단위 : 만원)

연도	산업재해자 1인당 경제적 손실규모	비 고
2012	20,872.82	1) 2012년 및 2013년은 직접손실액+하인리히 방식에 의하여 직접손실액(산재보상금 지급액)의 4배를 간접손실액으로 하여 계산된 것임
2013	20,666.89	
2014	20,460.22	
2015	20,255.61	2) 2014년부터는 재해자 감소율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99%를 적용함
2016	20,053.05	

* 출처 : 2013 산업재해현황분석(고용노동부, 2014.11.)의 자료를 수정함

15) 2004년부터 2014년까지 감가상각자산을 대상으로 단순 회귀분석[상각자산금액_{t+1}=f(상각자산금액_t)]한 계수 값이 1.05이므로 5%를 자연 증가분으로 간주하여 분석한다.

16) 2012년과 2013년의 재해자 수를 비교하여 432명에 감소로 추정하였으나, 이러한 현상이 해당 연도에만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재해자 감소율을 산출하고 5년 평균 재해자 감소율을 각 연도의 전년대비 재해자 수 증감율을 5년 평균하여 도출한 평균 재해자 수 증감율은 -0.81%이다. 근거자료는 아래와 같다. 평균 재해자 수 증감율을 반영하여 2012년 재해자 수 대비 2013년 재해자 수의 감소를 계산하면 747명(92,256명×0.81%)이다. 747명으로 계산된 편익은 2013 산업재해 현황분석(고용노동부, 2014.11)에서 2012년 대비 2013년 재해자 수가 432명 실제 감소된 것 보다 과대하게 계상될 것이므로 보수적인 관점에서 재해자 수의 감소는 432명으로 하여 편익을 추정한다.

(단위 : 명)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재해자 수	95,806	97,821	98,645	93,292	92,256	91,824
전년대비 재해자 수 증(감)율	—	2.10%	0.84%	(5.43%)	(1.11%)	(0.47%)
전년대비재해자 수 증(감)	—	2,015	824	(5,353)	(1,036)	(432)

재해자 수 감소에 따른 편익을 분석하는 단계로 위에서 제시한 산식에 따라 <표 6>에 재해자 수 감소에 따른 손실 감소액으로 편익을 제시한다. 2015년도 조세지출을 통해 2015년 안전설비 투자 금액을 추정할 결과 2015년도 안전설비 투자 조세지출액은 113억원이며, 대기업(98%)과 중소기업(2%)으로 구분¹⁷⁾한 후 안전설비 투자 금액을 추정하면 3,723.62억원이다. 이에 매년 설비투자 증가분 5%¹⁸⁾를 가정할 경우 2016년도 안전설비 투자 금액은 3,909.80억원이며 투자가 1% 증가하면 안전보건투자 증가액은 39.10억원이 된다.

<표 6> 재해자 수 감소에 따른 손실 감소액(=편익)

(단위 : 억원, 명, %)

① 안전보건 투자 증가율(%)	② 안전보건투자증가액 (억원)	③ 재해자 수의 감소(명)	④ 1인당 경제적 손실 감소액(만원)	⑤ 경제적 손실 감소액(억원)
1%	39.10	222.86 ^(주1)	20,053.05	446.9 ^(주2)
5%	195.49	1,114.29	20,053.05	2,234.5
10%	390.98	2,228.57	20,053.05	4,469.0

(주1) 75.79억원 : 432명 = 39.098억원 : X명, X = 222.86명

(주2) 222.86(명) × 20,053.05(만원) = 446.9(억원)

위 <표 6>에서 보듯이 안전보건 투자가 1% 추가로 증가하면 39.1억원의 안전보건 투자가 증가하고, 이러한 증가에 따라 경제적 손실이 445.9억원 감소하는 편익이 발생한다는 의미이다.

2. 비용 분석

안전설비 투자를 활성화하고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세법 규정을 개정하여 세액공제를 확대할 경우 정부 입장에서 보면, 조세지출이 발생하며 이는 조세지원제도의 비용이라 할 수 있다.

17) 안전시설 및 보호 장치 투자비를 규모별로 구분한 안전보건 투자성과 지표개발 연구(2014,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이용하여 대기업이 98%, 중소기업이 2%를 지출하였다고 가정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18) 2012년 대비 2013년 감가상각자산의 회귀계수가 1.05169이므로 매년 자연증가분을 전년대비 5%로 가정한다.

〈표 7〉 안전설비 투자 증가에 따른 조세지출 증가액(=비용)

① 안전설비 투자 증가율(%)	② 안전설비투자 증가액(억원)	③ 규모별 배분 ^{주)} (억원)		④ 세액 공제율	⑤ 조세지출 증가액(억원)	⑥ 합계 (억원)
1%	39.10	대기업(98%×90%)	34.49	3%	1.03	1.28
		중견기업(98%×10%)	3.83	5%	0.19	
		중기업(2%×69%)	0.54	7%	0.04	
		소기업(2%×31%)	0.24	10%	0.02	
5%	195.49	대기업(98%×90%)	172.42	3%	5.17	6.44
		중견기업(98%×10%)	19.16	5%	0.96	
		중기업(2%×69%)	2.70	7%	0.19	
		소기업(2%×31%)	1.21	10%	0.12	
10%	390.98	대기업(98%×90%)	344.84	3%	10.35	12.89
		중견기업(98%×10%)	38.32	5%	1.92	
		중기업(2%×69%)	5.40	7%	0.38	
		소기업(2%×31%)	2.42	10%	0.24	

주) 규모별 배분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두 가지로 분류하였던 투자비비율(98%, 2%)을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으로 분류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투자성과 지표개발 연구(2014)의 안전설비 및 보호장치 투자비의 상대적 비중으로 안분하였음.¹⁹⁾

3. 순 편익

안전보건 투자를 1% 증가할 경우 즉, 39.1억원의 투자가 증가될 경우 순 편익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text{순 편익} &= 445.9\text{억원} - 1.28\text{억원} \\ &= 444.62\text{억원}\end{aligned}$$

그러나 안전보건 투자를 10% 증가할 경우 순 편익은 총 편익 4,469억원에서 총 비용 12.89억원을 차감한 4,456.11억원으로 추정된다.

19) 즉,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규모별 배분을 위하여 300인 이상~999인 이하인 경우를 중견기업, 1,000인 이상인 경우를 대기업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안전설비 및 보호장치 투자비의 상대적 비중인 10% (65,959.5만원), 90%(593,759.6만원)으로 배분하였다. 또한, 소기업과 중기업의 규모별 배분을 위하여 99인 이하인 경우를 소기업, 100인 이상~299인 이하인 경우를 중기업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안전설비 및 보호장치 투자비의 상대적 비중인 31%(5,007.9만원), 69%(11,048.6만원)으로 배분하였다.

VI. 결 론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및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법인 산업안전보건법 간의 관련성이 미흡하였고, 일부 대상설비를 규정할 때 방호장치를 분리하도록 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별표 4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별표 4에 대한 두 가지의 대안을 제시하고 각 대안별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세액 공제율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해 현황과 외국 사례 등을 비교한 결과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분류하여 세액 공제율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에서 나아가 중소기업 중 소기업을 분리한 후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소기업에 세제혜택을 가중하여 부여한다고 하여도 환경세제의 공제율인 10%를 초과할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10%의 세액 공제율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업종별로 재해율이 달라서 업종별 세액 공제율에 차등을 두는 것도 더불어 검토하였으나, 규모별 세액 공제율의 차등을 통하여 보완되고 세제가 너무 복잡해지는 단점이 있어 업종별로 차이를 두어 세액 공제율을 설정하는 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세제 외에 안전보건과 관련된 회계제도도 검토하였으며 검토결과, 산업안전을 위한 투자금액의 별도 표시 및 공시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회계 상 계정과목 구분 표시나 주석에 별도로 공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때, 구분표시나 주석공시의 내용은 세액 공제 대상의 범위 및 내용과 연결하여 추가적인 자료조정 없이 세무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안전보건 투자에 대한 편익과 비용 분석을 하였지만 자료 수집의 한계 등으로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없었다는 점을 밝혀두며, 안전보건 투자 관련 세액공제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함으로써 안전보건에 대한 투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EU 국가와 같이 보조금과 상호비교는 하지 못하였으며, 이 부분은 향후 후속연구로 남겨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2014. 2013년도 산업재해현황분석.
- 고용노동부. 2014. 안전보건 투자성과 지표개발 연구.
- 국회. 2015. 2015년도 조세지출예산보고서.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3. 건설업 보건관리자 선임관련 규제영향분석.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2.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확대에 따른 규제영향분석.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5. 산업안전보건(통합)관리자 제도 운영 및 컨설턴트 양성·활성화 방안연구.
- 송인만·윤순석·최 관. 2015. 중급재무회계 K-IFRS. 신영사.
- 송종국. R&D투자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정책의 효과분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전국경제인연합회. 우리나라 기업생태계-대기업·중소기업 비중 분석-.
- 한국산업안전공단. 조선업 안전보건 투자효과 분석연구.
- 한국은행. 2013. 인구구조 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재정포럼.
- 권성수·이영한. 2011.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되는 법인세 관련 정보의 변화와 시사점. 조세연구 제11권 제3집.
- 김명서·김요환. 2008. 환경친화기업의 환경정보 공시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대한경영학회지 제21권 제6호(통권 71호).
- 김성혜·이아영. 2015. 외국인투자자의 특성과 경영진단의견서의 공시품질 : 외국인대주주의 역할을 중심으로. 대한경영학회지 제28권 제3호(통권 125호).
- 김종선 외 2인. 2014. 코스닥 시장 벤처기업의 개별특성이 IR공시 효과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제9권 제4호(통권34호).
- 김태구 외 5인. 2004. 조선업 안전보건 투자효과 분석연구. 한국산업안전공단 연구보고서.
- 문점식 외 2인. 2009. 연구개발비세액공제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세연구 제9-2집.
- 박경인·이가연. 2014. 기업분할의 목적에 따른 공시효과 분석. 무역연구 제10권 제5호.
- 박성화. 2015. 기업집단 소속 비상장기업에 의한 공시의 정보전이효과 : 최대주주 지분 변동 공시. 경영교육연구 제30권 제1호.
- 박애영. 2014. 코스닥 기업의 횡령 공시와 정보비대칭. 대한경영학회지 제27권 제10호(통권 120호).
- 박종근 외 2인. 2004. 건설공사의 안전투자비에 대한 효과 분석. 한국안전학회지 제19권 제4호.
- 송자영. 2010. 근로자 보건향상을 위한 '사업장 건강증진 운동' 추진효과 분석.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해면. 2011. K-IFRS 적용기업의 계정과목과 주식사향 변동. 국제회계연구 제35집.
- 오원기 외 7인. 2008. 제조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비용. 대한사업의학회지 제20권 제1호.
- 원종학·김진수. 2006. 연구개발투자 조세지원제도의 효과 분석-기업별 자료를 사용한 분석-.

- 산업경제연구 제19권 제4호.
- 윤영선·윤태화. 2011.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가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국제회계연구 제37집.
- 윤재원·최현돌. 2005. 재무제표 본문에 인식된 정보와 주식 등에 공시된 정보의 주가관련성 차이 : 중간목표비용에 의한 은행의 대손충당금설정 사례를 대상으로. 회계저널 제14권 제1호.
- 이아영·김길훈. 2014. 경영진단의견서(MD&A)의 공시품질과 타인자본비용. 경영교육연구 제29권 1호 (통권 83집).
- 이영숙. 2013. 우리나라 투자지원 조세제도 현황과 주요국 제도와의 비교연구. 국회예산정책처.
- 이흥근. 2002. 관광호텔의 임시투자 세액공제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관광식음료경영연구.
- 임경원·박성규. 2011. 환경회계정보 공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국제회계연구 제37집.
- 장금주·강민정. 2014. 투자자 유형별 비정기 공시에 대한 차별적 거래 행태 : 가결산 손익 관련 수시 및 공정 공시를 중심으로. 대한경영학회지 제27권 제8호(통권 118호).
- 전용일. 2014.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 시장 산업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안전보건공단.
- 정도진·이효진. 2013. 코스닥 '투자주의 환기종목' 공시에 대한 주가반응. 경영교육연구 제28권 제6호.
- 정영우·정현철. 2014. 국내외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변경 공시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 대한경영학회지 제27권 제3호(통권 113호).
- 최재욱 외 6인. 2013.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개선을 위한 투자효과 분석. 한국안전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
- 최종민. 2014. 우리나라 제조기업의 환경정보 공시에 대한 영향요인들 : 통합적 연구. 경영교육연구 제29권 제3호.
- Brosseau, L. M., Li, S.Y. 2005. Small business owners' health and safety intentions : A cross-sectional survey. Environmental Health : A Global Access Science Source. 4(23) : 1-9.
- Elsler, D., Treutlein, D., Rydlewska, I., Frusteri, L., Krüger, H., Veerman, T., Eeckelaert, L., Roskams, N., Van Den Broek, K., Taylor, T.N. 2010. 'A review of case studies evaluating economic incentives to promot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candinavian Journal of Work, Environment & Health, Vol.36, No.4 : 289-298.
- Furuki, K., Hirata, M., Kage, A. 2006. Nationwide Survey of Occupational Health Activities in Small-Scale Enterprises in Japan. Industrial Health. 44 : 150-154.
- EU-OSHA-European Agency for Safety and Health at Work, 2010, 'Economic incentives to improv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 A review from the European perspective',
- EU-OSHA-European Agency for Safety and Health at Work, 2011, 'How to create economic incentives i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 A practical guide',
- Health and Safety Executive. 2007. A guide to health and safety regulation in Great Britain.

- Health and Safety Executive. 2007. HSE statement to the external providers of health and safety assistance.
- Japan International Center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2008. About the Government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Japan's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Law and Related Regulations.
- Paton, Nic, 2007.1, 「The bait debate」, Occupational Health, Vol.59 Issue 1 : 20
- Rabin S., et al. 1998. Impact of Managers' Personal Determinants in Notifying Workplace Hazards. American Journal of Industrial Medicine 33 : 493-500.
- The Management of Health and Safety at Work Regulations 1999.
- Toren, K., Sterner, T., 2003. 「How to promote prevention : economic incentives or legal regulations or both?」, Scandinavian Journal of Work, Environment and Health, Vol. 29, No. 3 : 239-245.
- Veerman, T.J. (2010), 「Subsidies for safe and healthy workplaces : sectoral covenants in the Netherlands 1999-2007」, Presented at EU-OSHA Ecosh workshop on economic incentives, 2009
- IBFD, <http://www.ibfd.org>
- 삼일아이닷컴, <http://www.samili.com>
- 통계청. e-나라지표 통계자료, 물가상승률 2014 및 2013년 1, 2분기 월평균 근로일수, <http://www.index.go.kr>
- 중소기업중앙회 통계DB, <http://www.kbiz.or.kr/user/site/statsDB.do>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 <http://www.index.go.kr/>
- http://www.kefplaza.com/labor/snh/snh_list.jsp
- <http://www.dutycenter.net/support/guide/guideInfo01.go>
- <http://www.hse.gov.uk/pubns/hse49.pdf>
- <http://www.hse.gov.uk/pubns/externalproviders.pdf>
- <http://www.jniosh.go.jp/icpro/jicosh-old/english/guideline/law.html>

An Study on Tax Credit on Safety and Health - Focus on Company Size and Industry Type -

Chung Jin Shim* · Ja Eun Koo**

〈Abstract〉

We examine the reason why lots of Korean corporation don't have a tax credit on safety & health. We find that the connection of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25' and 'occupation safety and health act' is not clear. Also we find that firms must separate the part of safety device from a machine to have the tax credit but, firms can not separate under the present system of accounting. We suggest some ways to improve the connection of two acts and to separate safety device from a machine through improving accounting and disclosure system. Also, in order to reduce the compliance costs of taxation, we suggest that accounting and taxation should be linked.

Firms are classified as small & medium sized firm, medium sized firm and large sized firm. In accordance with the size, credit rate is applied differently. We find that we should give small sized firm more tax credit to reduce disaster-related mortality rate. So, we suggest the way to separate small firm from small & medium firm. And we suggest a credit rate as 10%. Even though we suggest small sized firm more benefit, the benefit should be balanced with tax credit on environment. We don't suggest to apply differently tax credit rates by industrial classification. Because the difference of tax credit rates by industrial classification is partly reflected little in the difference of tax credit rates by size classification. Also, it will be too complex that we change tax credit on safety & health. We expect to minimize the social losses related to industrial safety.

〈Key words〉 Tax credit on safety & health, Occupation safety and health act, Disclosure system, Small sized firm, Social losses

*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Konkuk University, chjshim@konkuk.ac.kr, First Author

** Assistant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University of Suwon, jekoo@suwon.ac.kr, Corresponding Author